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3. 8. 1.
개정 2013. 9. 25.
개정 2014. 4. 1.
개정 2015. 4. 1.
개정 2016. 4. 11.
개정 2017. 1. 10.
개정 2018. 1. 23.
개정 2019. 1. 7.
개정 2020. 1. 9.
개정 2020. 3. 25.
개정 2021. 1. 11.
개정 2022. 1. 5.
개정 2023. 1. 3.
개정 2024. 1. 22.

1. 목 적

이 지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1) 수행기관 :**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의 관리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협약을 체결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말함
- 2)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을 말함

3. 사업 내용

가.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나. 지원 내용

- 1)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시험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차등지원
- 2) 사업 기간 중 기업 당 최대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제외

다. 지원 분야

- 1) 【별표 2】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서 자기시험 후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

라. 신청 대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서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상세 내용은 사업연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참조)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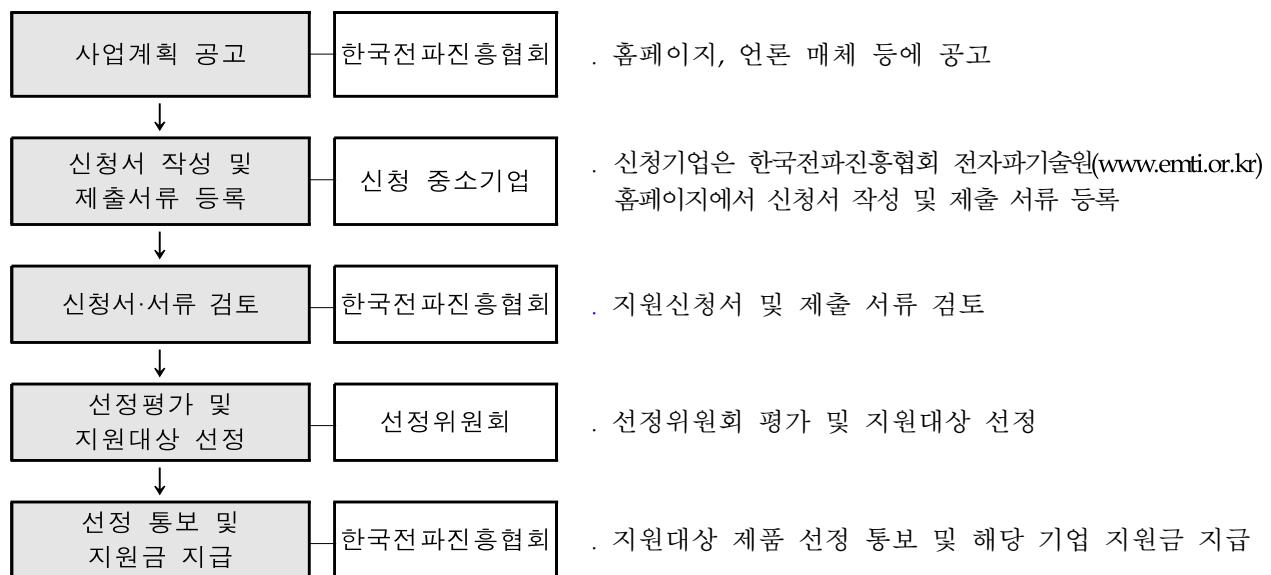
마. 신청 제한조치

- 1)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2)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인증명칭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바. 가점 부여

- 1)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은 가점 부여

사. 회차별 추진 절차



4.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가.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

- 1) 계획수립 시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 계획을 수립
- 2) 수행기관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에 공고함
- 3) 사업시행 공고문에는 사업개요, 신고요령, 사업지원 절차, 공지사항 및 접수처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 마련

- 1) 수행기관장은 신청한 제품에 대해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하여 기업의 영세성, 기술성, 사업성 등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구성된 【별표 1】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마련

5. 신청관련 서류 작성·제출 및 검토

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 1)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 가기를 클릭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별첨】 등록 완료 후 “접수” 버튼 클릭
 - ① 등록한 신청서는 회차별 신청·접수 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불가
- 2) 증빙이 가능한 서류 및 자료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신청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신청서를 작성할 것
- 3) 신청시 유의사항
 - ① 지원신청은 신청제품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후 가능
 - ②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가능(추가 서류 제출 시 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의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1) 수행기관장은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서 기재 내용의 확인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 조치도록 함
※ 필수 제출서류 미비 및 지원자격 미충족 시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 수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6. 선정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

가. 선정위원회 구성

- 1) 선정위원회 구성은 평가 및 지원대상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2) 수행기관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구성시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하여 운영함
- 3) 선정위원회는 각 회차별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
 - ①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
 - ② 지원대상 신청제품에 대한 순위 확정 및 선정
 - ③ 기타 수행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 선정위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

① 선정기준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 공무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경영 : 경영.기술지도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책임심사역(팀장) 이상
-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② 제외기준

-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 국가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 신청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신청제품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1) 선정위원회 위원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별표 1】의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작성
- 2) 선정위원회는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 창업기업은 사업연도 기준 창업 2년 이내 기업
- 3) 선정위원회는 각 선정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상의 총점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계산
- 4) 선정위원회는 최종 평균점수에 따라 지원대상 우선순위 확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제품에 대해 지원대상 제품 선정
※ 동점일 경우 기업의 영세성>기술성>사업성 순으로 높은 점수의 제품 선정
※ 동일업체의 제품이 동점일 경우 시험비용이 큰 금액 제품 선정
- 5) 선정위원회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회차별 지원대상 제품 선정

구분	회차별 지원대상 범위
1회	사업연도 지원대상 목표치의 약 40% 수준
2회	사업연도 지원대상 목표치의 약 30% 수준
3회	사업연도 지원대상 목표치의 약 30% 수준

- 6) 수행기관장은 해당 회차별 선정된 제품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에 근거하여 지원규모를 확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제품에 대해 해당 신청기업에 선정 통보

다. 선정제품의 지원기준

- 1) 선정된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시험비용의 지급은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차등 지급

기 준	지 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0%

※ 신청기업의 규모 산정 기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별첨]의 해당 구비서류 중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창업기업으로 최근연도(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억원 미만으로 봄

- 2) 사업 연도별 기업당 1개 제품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제외

- 3) 시험수수료가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에 못 미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제외

7. 지원금 지급 및 환수

가. 지원금 지급

- 1) 수행기관장은 지원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 지원금을 전액 일괄 지급

나. 지원금 환수

- 1) 실적 허위기재(제출) 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8. 신청 취소 및 참여 제한

- 1) 신청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이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취소

- 2) 수행기관장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에 대해 신청의 참여 제한

- 3) 참여 제한 사유 및 참여 제한기간 등은 【별표 4】에 따름

9. 사업관리

가. 운영위원회

- 1) 수행기관장은 사업추진계획, 운영지침 개정,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
- 3) 운영위원회 구성은 산업계, 학계, 시험기관 등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4) 운영위원은 사업목적, 성과목표, 사업관리, 사업효과 각 항목에 대하여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 실태를 검토함
- 5) 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시급한 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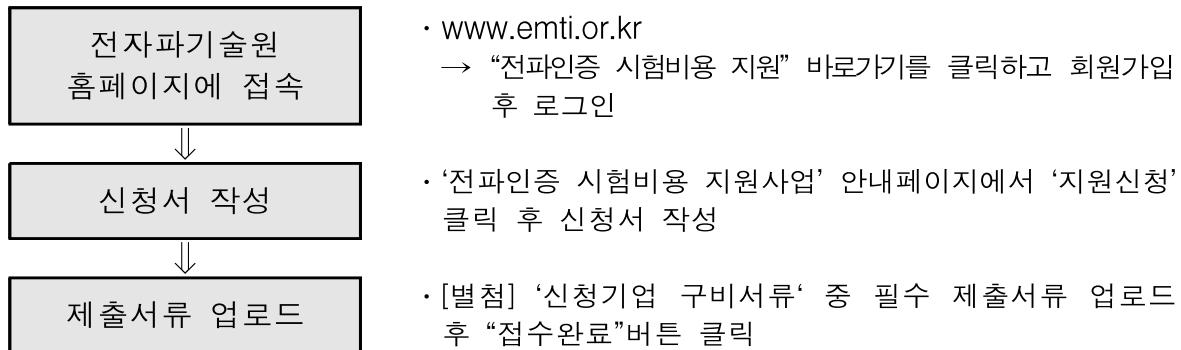
운영지침 별지·별표 목록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17
【별지 제1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18
【별지 제2호】 제품 상세 설명서	20
【별지 제3호】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21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2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신청서	23
【별표 1】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24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25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	26
【별표 4】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38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절차》

1. 인터넷 신청·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자료실 등 단순정보의 열람은 별도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지원신청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log-in)을 하여야 함
 - 신규 접속자는 먼저 회원등록부터 하여야 함

2. 신청 절차

-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지원서비스 중 ‘전파인증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를 클릭

* 회원가입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ID 생성 후 관련 정보 입력

<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 >



-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안내페이지에서 ‘지원신청’ 클릭

< 온라인 신청 절차 >

순번	구 분	내 용
1	동의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자 정보, 내용, 제품 및 기업 특성 입력 [별첨2 참조]- [별첨1] ‘신청기업 구비서류’ 중 기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업로드
3	제출 서류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첨1] ‘신청기업 구비서류’ 중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확인) 신청 접수 완료 후 'My Page'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상태 확인

- 처리상태는 ①신청 중, ②신청접수, ③반려, ④재접수, ⑤접수완료 구분되며 ‘접수 완료’ 시 신청접수 완료

처리상태	내용
① 신청 중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② 신청 접수	신청이 완료된 상태
③ 반려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
④ 재접수	반려처리 된 상태에서 보완 완료하여 재접수한 상태
⑤ 접수완료	최종 신청·접수 완료

※ 신청 완료 시 ‘신청 접수’ 상태로 바뀌며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완료’로 변경

※ 반려 시 등록된 메일주소로 보완요청 메일 송부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비 고
❶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❷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인증서만 해당 (변경신고 건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인증서상 제조사가 해외 제조사일 경우 자체 개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OEM 계약서 등) 추가 제출
❸ 시험기관 발급 공식 시험성적서 사본 1부(성적서 전체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의 시험항목별 모든 성적서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첨부된 시험 성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성적서 누락 시 지원금액 산정 시 미반영)
❹ 시험수수료 증빙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송금내역서(입금증) 사본 1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비용 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 ※ 카드 결제의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가능 ※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세금 계산서 상 여러 개의 모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제품의 시험비용에 대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추가 서류 제출
❺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 제출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❻ 전년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❼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상 제조사가 해외 제조사일 경우 자체 개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OEM 계약서 등) 제출

- 기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해당 시 온라인 업로드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신제품·신기술	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관련 증빙서류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NEP	
산업재산권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관련 특허 등록/출원 사본 ○ 신청제품관련 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실용신안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가점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생략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사본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생략
	녹색기업	
사업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 신청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신청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에서 신청제품 소개 증빙서류(홈페이지 캡쳐 등)

- 선정기업 제출서류 : 최종 선정 후 별도 제출

-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 관련 확인 동의서 1부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20 -0회--00)

□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주 소 (홈페이지)					
실무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핸드폰 (E-mail)	
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명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천원	수출액	전년도	천불

□ 신청내용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적합성평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합인증		<input type="checkbox"/> 적합등록	
	인증 또는 등록번호 ()			
	인증 또는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input type="checkbox"/>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명				
시험수수료	원			

□ 제품 및 기업 특성

제품의 용도 및 기능	
신제품·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 NEP()
산업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실용신안출원()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일반부서와 병행()
기술수준 및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 제품소개()
시장 경쟁력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Inno-Biz기업() ■ 벤처기업() ■ 녹색기업()
<p>당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①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p>* 첨부서류 :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p>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제품 상세 설명서

업체명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제품 특성	(제품의 용도, 기능,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의 특성 등 기재)	
<p>○ 제품명 : 용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명으로 기재(예시, 차량용 블랙박스, 무선 AP 등)</p> <p>○ 제품사진 : 최소 1장 최대 2장 업로드</p> <p>○ 제품사진 : 제품 사진은 jpg, png 등 사진 파일로 업로드 하며 pdf 파일로 업로드 불가</p>		
<u>※ 제품명, 제품사진 필수 반영</u>		
기술 및 시장 현황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 국내외 개발동향 등 기재)	
제품 경쟁력 & 기술 우수성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술적 차별성, 국내외 타사 제품 대비 상품성, 시장 경쟁력, 품질의 우수성, 산업체산권, 공인 인증 등 기재)	
전파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국내 적합성 평가 시험 및 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3호】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우수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이 되며 既지원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_____
- 동의자(대표자) 성명 : _____ (인)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_____
- 동의자(대표자) 성명 : _____ (인)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5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①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금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③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동의자(대표자)

(인, 서명)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6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신청자격 확인서**

항목	해당여부	비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확인	기업명	
	대표이사	(인)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7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o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직책)	전화		E-mail	
	성명)	FAX		핸드폰	

○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한다.

붙임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당사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표 1】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 신청기업명 :
- 기기명칭 :
- 적합성평가 구분 : [] 적합인증, [] 적합등록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비고	평가점수															
기업의 영세성 (30점)	매출액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15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3점)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1점) <p style="margin-top: 5px;">※ 사업연도(‘24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평가</p>	정량																
	상시 근로자 수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 (15점) ○ 전년도 근로자수 10~50명 미만 (13점) ○ 전년도 근로자수 50명 이상 (11점) <p style="margin-top: 5px;">※ 사업연도(‘24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으로 평가</p>																	
기술성 (30점)	신제품·신기술 인증 보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이 NEP 신제품 인증을 득한 경우 (10점) ○ 신청기업이 NET 신기술 인증을 득한 경우 (8점) ○ 미보유 (6점) 	정성																
	산업재산권 보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등록(또는 실용신안등록)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10점) ○ 특허출원(또는 실용신안출원)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8점) ○ 미보유 (6점) 																	
	연구시설,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부설연구소 (10점) ○ 연구 전담 부서 (8점) ○ 일반부서와 병행 (6점) 																	
제품 경쟁력 (40점)	기술수준 및 차별성	2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2</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r> </table>	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정성	
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시장 경쟁력	2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2</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r> </table>	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합계		100																		
가점 (6점)	Inno-Biz기업 등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건당 1점, 최대 2점) 	정량																
	창업기업 등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평가의견																				

평가위원 :

(인)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 o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와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적합성 평가기준 적용분야 참조(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 : <http://rra.go.kr>)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KN 301 489-2(무선판호출용 무선설비)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5(간이무선국)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3(생활무전기)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휴대용기기 (주1)	DC소형 제품(주2, 3)	AC소형 단상(주3)	AC중형 단상(주4)	AC대형 단상(주5)	AC대형 3상(주5)
1,050,000	1,800,000	1,900,000	2,350,000	2,950,000	4,150,000

- (주1) 휴대용기기 :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
(주2) DC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 수수료 추가
(주3)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1인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4) 중형 : 20kg 이상 6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5) 대형 : 60kg 이상의 제품으로서 3인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 추가 사항

- o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 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text{표준단가} = \text{기본단가} + \text{추가단가} = \text{기본단가} + \{1/2(\text{시험모드} - 1) \times \text{기본단가}\}$$
- o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
 - WLAN bgn : 1 시험모드
 - WLAN abgn : 2 시험모드(2.4 GHz, 5 GHz)
 - Bluetooth : 1 시험모드
 - 휴대폰 : 6 시험모드(음성통화, BT, WLAN, mega Camera, MP3 or MP4, USB link)
 - 중계기 : 제품에 따라 선택(1 ~ 4 시험모드)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2.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장치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경보자동전화장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간이무선국 · 우주국 ·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선박국용 레이더기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3]의 제2항(적합성 평가 시험 수수료) 가. 무선분야, 나. 무선분야(구 형식검정)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자동 식별장치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1,300,000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라디오존데	1,100,000	
	라디오로봇트	1,2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500,000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1,2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1,500,000	
	자 가 용	1,4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5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700,0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자기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대	1,500,000	
	VHF/UHF대	1,300,0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400,0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날로그	1,300,000	
	디지털	1,200,00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1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1,100,000	
※ 기타용도 : 데이터전송용/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도난, 화제,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중계용/이동체식별용/소형기 지국용/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등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1,300,000	
	기타용도	1,400,000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대역	수동형RFID	1,200,000
		FHSS방식	1,300,000
	기타대역	13.56MHz 등	1,100,000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1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100,000	
코드없는 전화기	아날로그방식	1,300,000	
	디지털방식	1,5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기기 한함)	3.1~4.8GHz대역	1,500,000	
	7.2~10.2GHz대역	1,3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1,7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1,800,000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송·수신장치	1,900,000	
	송신장치	1,600,000	
	수신장치	1,2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3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1,600,00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디아용 무선기기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디아용 무선기기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이동국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대역	이동국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 추가 사항

- o 기종 또는 방식이 2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o 2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단가의 50%를 추가 적용함(단, 1개의 제품에 2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위의 50%내에서 적용)
 - 2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예 : AC, DC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주파수대역이 2이상인 기기(예 :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광대역/협대역기기(예 : V/UHF 무선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예 :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예 :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OFDM, DSSS 등)
 - 2이상의 통신속도 및 변조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IEEE802.11b,g 등)
 - 2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예 : 코드없는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이상의 송·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예 :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3.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유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100,000	
극성반전/타이트렁크/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3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이하)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1,100,000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100,000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100,000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종합 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2,500,000	
방송 공동수신 설비류	수동소자	700,000
	능동소자	2,5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1,1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제한 수신시험 제외)	1,100,000	
광통신용 회선 종단장치	1,300,000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1,500,000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의 제2항(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라. 유선분야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 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 추가 사항

- 추가단가는 카드회선 종류 당 25만원 (64kbps, 2.048kbps, 44,736kbps, 155,520kbps)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4.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SAR 표준단가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MHz 이상)	3,000,000	3,0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100MHz 대역	-	3,000,000
	270~470MHz 대역		
	900MHz 대역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00MHz 대역	3,000,000	3,000,000
	1.6GHz 대역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MHz 대역	3,000,000	3,000,000
	800MHz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3,0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GHz 대역	3,000,000	3,000,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GHz 대역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GHz 대역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 대역	3,000,000	3,000,000
코드없는 전화기	1.7GHz 대역	3,000,000	3,000,000
	2.4GHz 대역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	3,000,000	3,000,000	

□ 추가 사항

- ① SAR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단가에 대역 및 모드의 추가 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함

구 분	추가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추가 대역/모드	1,800,000	1,800,000

- ② 기본단가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 ③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단가에 공중선전력이 20 mW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 추가단가 = 추가 대역, 모드수 × 추가대역/모드요율
- ④ 두부, 몸통 SAR 측정이 모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두부, 몸통 각각의 기본단가에 두부, 몸통에 대한 각각의 추가단가를 ③에서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다.
- ⑤ 무선방식(예, 무선랜+WCDMA+LTE 등)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단가에 부가하여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⑥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5.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 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제외)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5(조명기기류)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이상)
KN 22(정보기기류)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KN 50(전기철도기기류)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이상 시험 제외)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환경)
KN 61000-6-4(산업환경)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음암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시험 제외)
KN 51(전기철도기기류)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 시험 제외)

KN 60601-1-2(의료기기류)
KN 61547(조명기기류)
KN 60974-10(아크용접기)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N 61000-6-2(산업환경)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KN 15194(전기자전거)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소형 단상 (주1)	중형 단상 (주2)	대형 단상 (주3)	대형 3상 (주3)
1,412,000	2,118,000	2,824,000	4,396,000

(주1)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2)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3)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주4) KN 301 489 규격은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적용

□ 추가 사항

- o 해당 시험종목군이 2이상인 복합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종목군별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o 해당 시험종목군의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text{표준단가} = \text{기본단가} + \text{추가단가} = \text{기본단가} + \{1/2(\text{시험모드} - 1) \times \text{기본단가}\}$$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6.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1,100,000

추가 사항

- o 추가단가는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무선 표준단가의 추가사항 적용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7.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강도 표준단가

기본단가

- o 지정시험기관 실 소요단가 적용
- o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참고>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는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의 최근 권장 시험수수료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수수료를 고려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산정한 단가임

【별표 4】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한사유	제한기간
○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6개월
○ 수행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수행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년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년